

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계속지원 성적기준 상향('21.2학기) 관련 세부지침

< '21. 7. 9.(금),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>

◆ 매학기평가

- (~'20년 신규선발자) 산출가능한 '21.1학기 성적이 있을 경우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적용하되, 산출가능한 '21.1학기 성적이 없거나 산출불가능한 경우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- ('21년~ 신규선발자) 상향 후 성적기준 적용

◆ 중간평가(2+2)('23년부터 적용 예정)

- (~'20년 신규선발자) 직전 2개 학년 백분위점수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- ('21년~ 신규선발자) 직전 2개 학년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

I 상향 전·후 계속지원 성적기준

□ 상향 전·후 “매학기평가” 성적기준

○ 상향 전 매학기평가 성적기준('21.1학기)

- ~'11년 신규선발자: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- '12~'19년 신규선발자: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- '20년~ 신규선발자
 - (등록금)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 - (생활비) 백분위 90점 이상

○ 상향 후 매학기평가 성적기준('21.2학기)

- ~'19년 신규선발자: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
- '20년~ 신규선발자
 - (등록금)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
 - (생활비) 백분위 92점 이상

II 장학생별 적용 관련 세부지침

□ “매학기평가” 적용 세부지침

○ ~'20년 신규선발자

- '21.1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경우
 - 최근 산출된 성적의 학기가 '21.1학기~인 계속장학생은 상향 후 계속지원

성적기준(생활비 지원기준 포함) 적용

- '21.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

- 휴학 등으로 인해 최근 산출된 성적의 학기가 ~'20.2학기인 계속장학생은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(생활비 지원기준 포함) 적용*

* 해당 학기 휴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문 제출 필수

- '21.1학기 성적이 산출 불가능한 경우

- '21.1학기 성적이 현장실습, 교환학생 또는 Pass/Fail 과목만 이수 등으로 인해 산출이 불가능한 계속장학생은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(생활비 지원기준 포함) 적용*

* 해당 학기 현장실습, 교환학생, 성적 산출 불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문 제출 필수

○ '21년~ 신규선발자

-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(생활비 지원기준 포함) 적용

□ “중간평가(2+2)” 적용 세부지침('23년부터 적용 예정)

○ ~'20년 신규선발자

-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
○ '21년~ 신규선발자

-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

III 주의사항 및 적용 예시

□ “매학기평가” 적용 시 주의사항(~'20년 신규선발자)

○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

- '21.1학기 성적이 산출 불가능한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학기부터는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(직전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학기 전까지는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)
- '21.1학기 성적이 Pass/Fail 과목만 이수 등으로 인해 산출이 불가능한 계속장학생은 총 평균성적(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)이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
- '21.1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/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을 적용하되,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-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/Fail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을 입력하되,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
○ 직전학기 성적 삭제(포기) 시

- '21.1학기 성적을 전체 삭제(포기)할 경우,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하되,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-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이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하되,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
○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

- 교환학생은 '21.1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할 경우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적용하되, '21.1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 불가할 경우 총 평균성적(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)이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

○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

-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하되,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
□ “대학기평가” 적용 예시(~'20년 신규선발자)

○ 예시 ①: 휴학

- '20.2학기 성적: 백분위 87점
- '21.1학기 성적: 휴학으로 인해 산출된 성적이 없음
- '21.2학기 성적: 백분위 89점

☞ '21.2학기 계속지원 가능*, '22.1학기 계속지원 불가

* '21.2학기는 '21.1학기 성적이 휴학으로 인해 없으므로, '20.2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

○ 예시 ②: 현장실습

- '20.1학기 성적: 백분위 91점
- '20.2학기 성적: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백분위 91점)
- '21.1학기 성적: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백분위 91점)
- '21.2학기 성적: 백분위 91점

☞ '21.2학기 계속지원 가능('20년도 신규선발된 I 유형 생활비 지원가능)*,

'22.1학기 계속지원 가능(단, '20년도 신규선발된 I 유형 생활비 지원불가)

* '21.2학기는 '21.1학기 성적이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이 불가하여 산출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('20.1학기 성적은 '20.2학기에 사용했으므로 '21.2학기에 사용 불가), '21.1학기 기준 총평균평점 성적이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(백분위 87점, '20년도 신규선발된 I 유형 생활비는 백분위 90점)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

○ 예시 ③: 교환학생

- '20.2학기 성적: 평점 3.56/4.5점
- '21.1학기 성적: 교환학생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평점 3.48/4.5점)
- '21.2학기 성적: 평점 3.67/4.5점

☞ '21.2학기 계속지원 불가*, '22.1학기 계속지원 가능(영구탈락이 아닌 경우에 한함)

* '21.2학기는 '21.1학기 성적이 교환학생으로 인해 성적 산출이 불가하여 산출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('20.2학기 성적은 '21.1학기에 사용했으므로 '21.2학기에 사용 불가), '21.1학기 기준 총평균평점 성적이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(3.5/4.5점)을 충족해야 하나 충족하지 못함(3.48/4.5점)

○ 예시 ④: Pass/Fail 과목만 이수 + 휴학

- '20.2학기 성적: 평점 3.58/4.5점
- '21.1학기 성적: Pass/Fail 과목만 이수하여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평점 3.5/4.5점)
- '21.2학기 성적: 휴학으로 인해 산출된 성적이 없음(총평균평점 3.5/4.5점)
- '22.1학기 성적: 평점 3.63/4.5점

☞ '22.1학기 계속지원 가능*, '22.2학기 계속지원 가능

* '22.1학기는 '21.2학기 성적이 휴학으로 인해 없어 산출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('20.2학기 성적은 '21.1학기에 사용했으므로 '22.1학기에 사용 불가), '21.2학기 기준 총평균평점 성적이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(3.5/4.5점)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

○ 예시 ⑤: 현장실습

- '20.1학기 성적: 백분위 88점
- '20.2학기 성적: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백분위 87점)
- '21.1학기 성적: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백분위 87점)
- '21.2학기 성적: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(총평균백분위 87점)

☞ '21.2학기 계속지원 가능*, '22.1학기 계속지원 가능**

* '21.2학기는 '21.1학기 성적이 현장실습으로 인해 성적 산출이 불가하여 산출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('20.1학기 성적은 '20.2학기에 사용했으므로 '21.2학기에 사용 불가), '21.1학기 기준 총평균평점 성적이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(백분위 87점)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

** 직전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학기 전까지는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

○ 예시 ⑥: 교환학생 + 휴학

- '21.1학기 성적: 백분위 87점(교환학생의 교환 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경우)
- '21.2학기 성적: 휴학으로 인해 성적 산출 불가
- '22.1학기 성적: 백분위 90점

☞ '22.1학기 계속지원 불가*, '22.2학기 계속지원 가능(영구탈락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, '20년도 신규선발된 I 유형 생활비 지원불가)**

* '22.1학기는 '21.2학기 성적이 휴학으로 인해 없으므로('21.1학기 성적을 '21.2학기 휴학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'22.1학기에 사용 가능), 산출 가능한 '21.1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하며,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(백분위 90점) 적용

** 최근 산출된 성적의 학기가 '21.1학기~인 계속장학생은 상향 후 계속지원 성적기준(생활비 지원기준 포함) 적용